

의안번호	2220066
의 퇴 인	백승아의원
회 답 일	2026.09.03.
추계번호	26C364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u>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u>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무규정
2	안 제2조제3항 신설 (교원에 대한 예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항).	의무규정
3	안 제16조제1항 (실태조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 보호조치, <u>제21조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제1항).</u>	재량규정
4	안 제20조제1항 제3호 신설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제1항). <u>3. 조사·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제21조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지원</u>	의무규정
5	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 및 소송 수행에 <u>필요한 지원 등을</u>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이 조사·수사 또는 소송의 시작 단계부터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항). 1.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2.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29조의3 신설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등)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제1항). 1. 시행계획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의 환류에 관한 사항 3.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세부 기준 마련, 예방 대책 수립, 모니터링 및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원을 대상으로 제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에 관한 사항 6. 교육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교육부장관은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2항).	재량규정
		제1항제6호에 따른 조사의 범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	의무규정
		국가는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4항).	재량규정
		그 밖에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항).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조 (목적)	○ (미대상)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법률의 목적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와는 관계가 없음

-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2	안 제2조제3항 신설 (교원에 대한 예우)	○ (미대상)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노력을 선언하는 권고적 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 발생과 무관함
3	안 제16조제1항 (실태조사)	○ (미대상) 개정안은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 ¹⁾ 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 등의 실태조사 범위에 포함하나, 이는 이미 시·도교육청이 수행 중인 조사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존 예산 및 인력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를 유발하지 않음
4	안 제20조제1항 제3호 신설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6	안 제29조의3 신설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등)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①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명시하고, ②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관할청 등이 수행하는 피해교원 보호조치에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포함함
- 또한, ③교육감이 사건의 조사·수사 및 소송 시작 단계부터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교원 등을 법률지원단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고, ④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보호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조사 등을 수행하는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

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안 제20조 및 제21조) 개정안 시행으로 법률지원단이 사건의 조사·수사 및 소송 시작 단계부터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교원 등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시·도교육청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변호사 선임 및 민·형사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개정안에 따른 법률 지원 수요, 대상 교원의 수 등이 불확실하여 현시점에서 추계에 한계가 있음

－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²⁾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표준약관에 따르면 수사단계를 포함해 1인당 660만원을 한도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참고자료] 「교원보호공제 표준약관」 주요내용

□ (안 제29조의3) 개정안에 따라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가 설치되는 경우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 운영비 등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조직 규모 및 담당 업무 등이 불확정적이고, 현재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동일 명칭의 기구가 설치·운영 중이므로 이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³⁾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된 상태이며, 조례에 근거한 시·도교육활동보호센터(23개소)가 운영 중임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상당·심리치료 비용 지원(상당·심리치료 비용 지원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교육활동 보호 업무는 교육부 및 교육활동보호센터(한국교육개발원)의 총괄하에, 시·도교육청 및 시·도교육활동보호센터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집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문지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

[참고자료] 「교원보호공제 표준약관」 주요내용

[참고표 1] 「교원보호공제사업 표준약관」

구분	보상내용	보장한도	주요 면책사유
배상책임	·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 법적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포함	· 1사고당 2억5천만원 한도 ※소 제기전 합의 시 1사고당 1억5천만원 한도	· 타법, 제도에 따른 공제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
민·형사상 소송비용	·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적분쟁 발생 시, 피공제자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 형사 사건의 소송비용 및 사건처리비용 ※ 가압류가처분신청·소제기·형사고소/고발은 반복적, 계속적 교육활동 침해행위 배제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가능	· 이하 한도액 참조	· 형사소송: 유죄 확정 시 · 민사소송: 고의중과실로 인한 책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
상해치료, 심리상담	·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 소진교원 등 대상 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과 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총 300만원 한도 내 · 소진교원 심리 상담 및 조언비: 10회 범위 내	· 동일한 내용의 보호조치에 상당한 비용을 받은 경우
재산상 피해비용	· 제3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피공제자의 소지품이 훼손된 경우 비용	· 피해물품 당 200만원 한도 내	· 소지품 등의 보관·관리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
위협대처서비스	·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폭행, 상해 등 중대사안 시 긴급 경호 ※ 신체적 위협이 피공제자의 교육활동과 관련없이 발생한 경우에도 교육활동 중인 학교 내에서 발생한 경우 경호서비스 제공	· 1사고당 20일 ※ 2인이 동시에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1사고당 최대 10일(2인×10회) · 위협이 지속되거나 재발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최대 20일까지 연장 가능	
분쟁조정	·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사안 발생 시, 변호사 또는 공제회 담당자 등의 분쟁조정 서비스	· 한도 없음	· 소송이 진행 중인 분쟁

주: 표준약관은 시·도교육청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담보해야 할 최소한의 보장범위로서, 시도별 여건에 따라 보장범위는 다를 수 있음

자료: 교육부, 「2026년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26.2.), 84p

[참고표 2] 「교원보호공제사업 표준약관」 변호사보수 한도액

분류	상세구분	단위(사건/피공제자)	한도액(원)	비고
가압류/가처분	신청	1건당	1,100,000	
	이의신청/취소신청	1건당	2,200,000	
	해당공탁에 따른 취소신청	1건당	550,000	
민사소송	2,000만원 이하	1인당	3,300,000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인당	5,500,000	
	4,000만원 초과	1인당	6,600,000	
형사고소(고발)	고소(고발)대리	1건당	3,300,000	피의자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공제자에 대한 증인신문, 의견서 제출 등을 위 한 변호사 자문이 상당히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단 계 포함하여 1건당 660만원 ※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 전 심 급 합산
형사소송	수사	1인당	3,300,000	
	기초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원인으로 한 2인 이상의 동일 학교 소속 피공제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 피공제자 1인당 2,200,000원			
	소송	1인당	6,600,000	수사단계 포함
	기초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원인으로 한 2인 이상의 동일 학교 소속 피공제자에 대한 형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피공제자 1인당 3,300,000원			

주: 표준약관은 시·도교육청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담보해야 할 최소한의 보장범위로서, 시도별 여건에 따라 보장범위는 다를 수 있음

자료: 교육부, 「2026년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2026.2.), 85p